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3. 16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1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1995년 3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병희)
가. 제안이유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투약 보급수수료를 정부처방에 따라 구분징수하여 이로 인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왔는바, 통일된 단일 수수료(2,000원)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치료 효과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업무의 원활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투약 보급수수료를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투약보급에 대한 수수료가 현행 환자의 증상정도에 따라 구분조제 투약함으로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수수료가 많을 때와 적을 때에 불편요인이 발생하여 수수료를 균일하게 적용하여 월투약분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여 환자들의 불편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현행수수료를 평균치로 계산할 때 개정후의 수수료의 금액이 같으므로 인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는 구수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은 원안의결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증개정조례(안)

의안	298
번호	

제출년월일 : '95. 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투약 보급수수료를 정부처방에 따라 구분 징수하여 이로인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왔는바, 통일된 단일 수수료(2,000원)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치료효과 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업무의 원활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투약 보급수수료를 개정

3. 관계법규

- 보건소법 제8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별표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3. 항결핵제보급”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수수료표)				
구분	종 목	단위	금액	비고
3. 항결핵제 보급	○초치료처방 에탐부톨+아이나+피라지나미드+리팜피신	6	1인 1개월분	
	에스엠+아이나+리팜피신+피라지나미드	6	1인 1개월분	
	에탐부톨+아이나+리팜피신	9	1인 1개월분	
	에스엠+아이나+리팜피신	9	1인 1개월분	2,000
	에탐부톨+아이나+리팜피신	6	1인 1개월분	
	에스엠+아이나+리팜피신	6	1인 1개월분	
	○재치료처방 피라지나미드+파스+에스엠	1인	1개월분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리팜피신	1인	1개월분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카나마이신	1인	1개월분	2,000
	피라지나미드+리팜피신+카나마이신	1인	1개월분	
	에탐부톨+리팜피신+카나마이신	1인	1개월분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	1인	1개월분	
	에탐부톨+리팜피신	1인	1개월분	
	리팜피신+피라지나미드+에탐부톨	1인	1개월분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